**FLW 기본 규정집**

**제 1조) FLW 배스낚시 토너먼트는 낚시 스포츠라 정한다.**

**제 2조) FLW 배스낚시 토너먼트는 스포츠 정신에 따라 FLW 조직위원회가**

**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.**

**제 3조) FLW 배스낚시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FLW에서 규정에 있어**

**모든 선수에게 적용되며 공정해야 한다. 또한 토너먼트가 개최되는**

**지방 자치단체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**

**제 4조) FLW 토너먼트 참가선수는 스포츠 정신에 맞는 페어플레이를 준수하며**

**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.**

**제 5조) 토너먼트 중 사고, 상해, 도난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으로 하며**

**주최 및 스폰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.**

**제 6조) FLW 본 규정은 FLW 모든 프로 토너먼트에 적용하며 FLW 조직위원장이**

**각 토너먼트의 위원장을 맡는다. 단 조직위원장이 부재 시 FLW 임원 중**

**한 사람이 대행할 수 있다.**

**제 7조) 토너먼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및 의결은 토너먼트 경기 위원장 및**

**임원의 결정에 따른다.**

**1항 규정변경**

**① 토너먼트 규정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조직위원회**

**임원이 회의를 소집하여 결정에 따른다.**

**② 본 규정을 변경 할 경우엔 조직위원회 소집 후 결정사항을**

**사전에 공표할 수 있다.**

**2항 FLW 본 규정의 각 조항은 토너먼트 전 홈페이지와 현장 공지를**

**최우선으로 하며 홈페이지 및 현장 공지가 없는 조항은**

**본 규정을 적용한다. 조직위원회는 위수구역을 포함한 토너먼트**

**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**

**3항 예기치 못한 우천 시 토너먼트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**

**조직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.**

**4항 검량을 마친 고기는 주최측과 무관하며 토너먼트 참가선수가**

**직접 처리한다. ( 현장주변에 잡은고기를 버려서는 아니 된다.**

**버리는 행위 적발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 )**

**5항 FLW 토너먼트 참가 선수는 FLW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.**

**제 8조) 규정 위반 행위의 판단은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**

**제 9조)　프로 토너먼트 참가 자격**

**1항 FLW 프로선수 등록 자격은 미국 본사인 FLW 프로 멤버십에 등록된**

**선수에 한 한다 FLW 등록은 당 년도에 하여야 하며 12월부로**

**끝이 난다. 등록 후 이를 조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**

**( 토너먼트 참가 전 멤버십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. )**

**2항 멤버십에 등록된 프로선수는 소정의 교육과 규정숙지를 마친 선수에게**

**참가 자격이 부여된다.**

**3항 프로 선수는 FLW 토너먼트 참가비 및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**

**규정 위반 시 벌금 및 패널티( 점수 )를 적용받게 된다.**

**( 토너먼트 참가비는 참가신청 시 기재된 기한내에**

**납부하여야 한다. )**

**4항 수상안전법 시행에 따른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 취득 등록**

**( 위 조항 미 이행시 참가 불가 )**

**5항 토너먼트 당일 건강 이상이나 음주( 품행 ) 으로 인하여 보트**

**안전운항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참가를 제한 한다.**

**6항 FLW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며 일반인 및 국내의**

**모든 조직위원회에 등록된 프로선수도 참가 가능하다.**

**7항 FLW 프로 토너먼트 출전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하며 고등학생은**

**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없다.**

**8항 부정, FLW조직을 음해, 토너먼트 방해 및 근거 없는 내용 등으로**

**인하여 조직의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선수는**

**참가 제한 및 제명 처분하며 이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.**

**제명으로 인하여 토너먼트 선수 자격을 상실한 선수는 차후**

**조직위원회를 거쳐 재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.**

**제 10조) 참가 신청**

**1항 토너먼트 참가신청은 프로 및 코앵글러, 아마추어 모두**

**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 진행 본부에 접수하여야 한다.**

**2항 FLW 프로 토너먼트에서는 토너먼트 참가 신청 후 출발 번호를**

**추첨하고 출발 번호를 교부받는다.**

**3항 출발 확인 및 귀착 확인을 의무화 한다. 그리하지 않을 경우**

**당 토너먼트에 실격처리 한다.**

**4항 FLW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 신청하는 선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**

**신분증과 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정면허 및 FLW 규정집을**

**지참하여야 한다.**

**5항 출발 번호 추첨과 토너먼트 참가신청 및 접수 마감은 조직위원회에서**

**결정한다.**

**제 11조) 토너먼트 진행**

**1항 개회식**

**① 경기의 시작은 접수부터 사회자의 폐회 선언까지 한다.**

**② 개회식에는 토너먼트 참가 신청이 완료된 선수**

**모두 참여하여야 한다. ( 미참석 시 -1000g 당일 적용 )**

**③ 개회식에서 당일 토너먼트 지역, 시간, 키퍼사이즈, 마리 수를**

**발표한다.**

**2항 출발**

**① 출발 방법은 당일 기후, 보트운항 대수 등을 고려하여**

**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**

**② 출발 순서는 본인이 숙지하여 호명 시 불이익을 당하지**

**않도록 한다.**

**③ 호명시 응답하지 않을시는 다음 순번의 선수를 먼저**

**출발시킨 후 마지막으로 출발시킨다.**

**④ 참가선수는 안전키를 부착 출발 시 확인 시켜야하며**

**보트 운항 시 항시 안전키를 착용하여야 한다.**

**안전키는 구명 복이나 몸에 부착하여야 한다.**

**미부착 시 실격 처리 한다.**

**안전상 조직위원회는 철저하게 확인 하여야하며**

**항시 검사를 하여야 한다.**

**⑤ 출발한 선수는 안전구역에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.**

**( 지시 불이행 -500g )**

**3항 귀착신고**

**① 토너먼트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정해진 시간 내에**

**귀착하고, 신고하여야 한다.**

**( 미신고 시 실격 )**

**② 귀착 신고는 출발 번호표 반납으로 한다.**

**( 분실 및 미반납 시 벌금 \ 10,000원 )**

**4항 폐회식**

**① 폐회식은 토너먼트에 참석한 전 선수가 참석하여야 한다.**

**( 미참석 시 -1000g 차기 토너먼트 적용 )**

**② 시상이 끝난 후 사회자의 폐회 선언으로 토너먼트가**

**종료된다.**

**③ 폐회 선언 후 선수는 출발 번호로 참석을 확인 한다.**

**④ 폐회 선언 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 정리 및 오물수거 등을**

**통하여 환경보호에 앞장 선다.**

**⑤ 폐회 선언 후 조직위원은 해당 기록사항에 서명 후**

**조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료화 한다.**

**제 12조) 경기의 성립과 중지**

**1항 토너먼트 당일 악천후의 상황에 따라 규칙을 변경하여 토너먼트를**

**성립할 수 있다.**

**2항 악천후시 통상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경지 중지,**

**경기규정변경, 장소를 변경하여 토너먼트를 진행할 수 있다.**

**3항 경기 전일부터 악천 후일 때는 주최 측에서 통신(전화) 또는 홈페이지**

**SNS를 통하여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경기 당일 악천후일 때에는**

**토너먼트 접수 장소에서 공지하며 경기 진행 중 악천후일 때에는**

**조직위원회 측에서 판단하여 변경사항을 공지한다.**

**4항 토너먼트 중 악천후로 위협을 느꼈을 경우 또는 경기중단이 선언된**

**경우 신속히 진행본부로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고**

**피난한 경우에는 상황 및 안전 여부를 진행 본부에 연락한다.**

**5항 토너먼트 개시 후 2시간이 경과되면 토너먼트는 성립된 것으로 하며**

**경기중지 선언 후 상황에 따라 귀착시간을 정한다.**

**( 통상 1시간 후 )**

**제 13조) 정보 교환 금지**

**1항 토너먼트 개시부터 종료까지 자신 이외의 다른 선수의 기법, 조과,**

**사용루어, 낚시장소 등을 화재로 삼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.**

**2항 토너먼트 개시부터 종료까지 참가자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어서는**

**안 된다.**

**제 14조) 자연보호**

**1. 토너먼트 지역 내에 여하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인공으로**

**낚시터를 조성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. ( 패널티 실격 )**

**2. 낚은 고기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**

**3. FLW에 참가하는 선수는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려서는 안 된다.**

**제 15조) 선수 복장 및 부착물 관리**

**1항 프로선수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한다.**

**① 협찬사와 스텝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프로선수는 반드시**

**FLW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. 또한 FLW가**

**새겨진 유니폼 착용을 권장한다.**

**② 신발은 뒤축에 끈이 없는 슬리퍼와 구두의 착용을 금지한다.**

**일반 운동화와 등산화, 장화 뒤축 끈이 있는 샌들 등의**

**착용을 권장한다.**

**③ 경기 중에는 모자와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**

**( 단 운항중 에는 모자를 벗어도 무방하다. )**

**④ 프로 선수는 조직위원회가 나눠준 FLW 규정집과 신분증,**

**수상동력레저기구조정 면허를 토너먼트 종료 시 까지**

**지참하여야 하며 불시 검사 할수 있다. ( 적발 시 -500g )**

**2항 FLW 모든 참가 선수는 조직위원회와 계약되어 있지 않은**

**모든 개인의 협찬사에 로고와 메이커 광고의 모자 및 복장에**

**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출을 허가한다.**

**( 로고, 브랜드, 마크의 패치, 스티커, 휘장 등 모자 복장,**

**보트에 부착하고 있는 로고들은 노출 가능하다. 단, 특별히**

**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거나 지정하는 메이커의 광고물은**

**노출 할 수 없다. )**

**3항 FLW의 로고 및 패치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부착한다.**

**① FLW패치는 상의의 좌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.**

**제 16조) 낚시 장비**

**1항 낚싯대, 릴, 루어, 어군탐지기, 디씨모터의 사용하는 수량에 대해서는**

**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.**

**2항 낚싯대의 길이는 8피트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8피트 이상 사용할 수**

**없다. 플라이 낚싯대는 10피트까지의 길이를 사용할 수 있다.**

**제 17조) 보트 규정**

**1항 FRP 보트와 알루미늄 보트 및 인보트, 아웃보트까지 토너먼트에**

**사용할 수 있다. 단 러버보트는 금지한다.**

**2항 보트의 길이는 10피트 10마력부터 참가 할 수 있다.**

**3항 보트 탑승 시 구명복를 착용하여야 하고 하선 시**

**구명복을 탈의 하여야 한다. 구명복은 허리 착용을 금지하며**

**허리 구명복은 착용할 수 없다.**

**4항 토너먼트에 사용되는 보트 참가선수는 수상레저 안전법과**

**시행 규칙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**

**5항 프로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보트는 조직위원회가 권장하는 형식을**

**준수해야 한다. 또한 수상 레저 안전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른**

**안전 정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엔진, 보트, 트레일러 포함**

1. **수상스키, 물놀이, 작업선 등 타 용도였다가 개조한**

**보트는 안 된다.**

1. **토너먼트에 사용되는 보트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매년**  **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.**
2. **물칸 및 기타 칸막이( 2중 물칸 ) 개조 및 신규로 제작할 경우**

**조직위원회에 신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 적발 시 제명 )**

**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물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**

1. **보트 안전점검에서 불합격한 보트는 FLW 어떠한 토너먼트에도**

**참가 할 수 없다.**

**7항 프로 토너먼트는 토너먼트에 따라 1인 1보트와 2인 1보트까지 승선을**

**원칙으로 한다. 단 기자나 카메라맨 승선은 허용한다.**

**8항 2인 1보트인 경우 프로선수 외에 한명의 탑승자는 코앵글러로 칭한다.**

**① 2인1보트의 경우 보트의 크기는 16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**

**② 코앵글러의 조 편성은 조직위원회의 방침에 따른다.**

**③ 보트 운항에 있어서는 보트 소유주가 운전하며( 참가 프로선수 )**  **낚시에 있어서는 보트소유주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.**

**코앵글러로 참가한 선수는** **가이드 모터가 달려있는**

**앞쪽방향인 앞쪽 데크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다. 또한**

**프로선수가 진행하는 앞쪽 방향으로 캐스팅 할 수 없다.**

**물론 프로선수와 코앵글러간의 네트 사용을 위해서는**

**앞쪽 데크로 접근 할 수 있다.**

**④ 코앵글러는 본인이 잡은 물고기는 프로선수와 합의하에**

**물칸을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. 또한 코앵글러가 잡은**

**물고기는 프로 선수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프로선수 또한**

**양도를 받아선 안 된다. ( 적발 시 둘 다 제명 )**

**⑤ 선수는 조직위원회의 동승자 명령 시 선수는 즉시**

**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동승자는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 후**

**승선 하여야 한다.**

**( 승선 거부 시 지시위반 )**

**제 18조) 안전 장비**

**1항 프로 토너먼트에 사용되는 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**

**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 장비 일체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.**

**① 프로 토너먼트에 사용되는 보트가 갖추어야 할 안전장비는**

**호각, 로프( 직경5mm, 20M이상 ), 바가지, 안전스위치**

**②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선수는 경기 당일 개회식 전까지**

**안전장비를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보트 앞 데크에**

**준비하여야 한다. ( -1000g )**

**2항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선수는 토너먼트 당일과 전일을 포함하여**

**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**

**① 보험료는 FLW 멤버십에 가입과 동시에 포함하여 일괄 징수하여**

**단체로 가입한다.**

**3항 보트를 임대하여 토너먼트에 참여 할 경우 조직위원회에**

**보트 등록번호와 안전검사증을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.**

**제 19조) 안전 운항**

**1항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안전운항과 관련 사항을 철저히**

**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보트 안전 장비를 정검 하여야 한다.**

**2항 저속 운항 구역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낮추어 운항하여야 한다.**

**저속운항 구역은 아래와 같으며 조직위원회가 추가로**

**설정 할 수 있다.**

**① 보트 출발 및 귀착 안전지역 ( -500g )**

**② 그물 등 위험 표시지역 ( 실격）**

**3항 모든 보트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정면으로 두 대의 보트가**

**교행 할 때에도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.**

**4항 두 대 이상의 보트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때에는 옆( 10M이내 )으로**

**가까이 운행해선 안된다.**

**5항 본류에서 타 보트를 추월 시는 반드시 좌측으로 추월하며**

**1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.**

**6항 먼저 출발한 보트가 고장으로 운항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호를 보내**

**후방의 보트를 안전하게 추월 시켜야 한다. 또한 포인트에**

**진입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 때에는 손을 들어 후방보트에**

**신호를 보내야 한다.**

**7항 경기도중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방법을**

**동원하여 즉시 조직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이**

**예상되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보트를 안전한 곳에 정박시키는**

**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. 고장으로 인한 귀착지연이 발생한**

**경우 정비 불량의 책임을 물어 실격 처리한다. 단, 자력으로**

**귀착마감 시간 내에 귀착할 경우는 정상적인 성적으로 인정한다.**

**고장신고를 받은 조직위원회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**

**모든 선수는 반드시 조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**

**고장 신고 후 수리를 마치고 정상운행이 가능해진 경우**

**대회를 계속 할 수 있다. ( 조금이라도 견인 시 실격 )**

**단순 고장으로 인한 견인은 대회 종료 후 귀착 하거나**

**계측이 끝난 보트를 조직위원회의 승인 아래 견인한다.**

**( 임의 견인 시 양측 실격 )**

**8항 사고 및 인명 구조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선으로 하며 이 경우**

**최초 발견자가 반드시 구조 및 환자 후송을 행하고**

**조직위원회 측에 연락을 취할 의무를 가지며 통신기기를 이용하여**  **119, 연막탄, 낚싯대 끝에 천을 매달아 흔드는 등 모든 수단을**

**동원하여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. 이에 관계되는 내용을**

**계측 종료 시까지 조직 위원에게 해명 및 상황설명을 하여야 하며**

**이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을 하지 않는다.**

**9항 슬로우 에어리어 구간에서 기어를 전진 상태로 넣어 최대한 천천히**

**운항한다. (아이들링 상태로만 하여야 한다.)**

**제 20조) 대상 어종**

**1항 FLW토너먼트 대상 어종은 라지 마우스 베스로 한다.**

**2항 마릿수 및 체장**

**① 1일차 토너먼트에서는 살아있는 물고기 최고 다섯 마리로 하며**

**그 이하의 마릿수도 계측 할 수 있다.**

**( 잡아온 고기 합산 무게를 계측한다. )**

**1일 이상 토너먼트에서는 다음 내용과 같으며 일차**

**별로 TOTAL 합산한 무게로 등위를 정하는 것을**  **원칙으로 한다. ( 프로 토너먼트 상황에 따라 계측 방법은** **변경 될 수 있다. 변경 시 조직위원회에서 따로 발표한다. )**

**TOTAL 무게와 포인트를 합산하여 등위를 가릴 수도 있다.**

**② 키퍼사이즈와 마릿수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**

**3항 프로 토너먼트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마릿수와 키퍼사이즈는**

**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마릿수와 키퍼사이즈는 경기**

**당일 결정한다.**

**제 21조) 물고기 보관**

**1항 라이브웰 에 정해진 마릿수 즉 다섯 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넣어서는**

**안된다. ( 마리 당 -1000g )**

**2항 확실하게 키퍼사이즈에 미달되는 베스를 라이브웰에 넣어서는 안된다.**

**3항 검량을 위해 가지고 온 물고기는 개인의 소유로 하며 검량 절차 등은**

**조직위원회의 절차에 따른다.**

**제 22조) 낚시 방법**

**1항 루어 및 플라이 낚시에 한한다. 단 토너먼트 중 생미끼의**

**사용은 금지한다. ( 생미끼+떡밥 사용 시 실격 )**

**2항 통발 또는 이중 물칸 또 다른 고기 보관함 사용 보이지 않는 물칸을**

**사용하거나 선수 간의 주고받기 등 부정행위를 절대 금한다.**

**( 실격 또는 제명 )**

**3항 트롤링( 주 엔진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) 낚시방법을 금지한다.**

**4항 드래깅( 전기모터를 사용하는）낚시 방법에 있어서 테스팅 후 계속해서**

**50M 이상 보트를 진행시켜선 안된다.**

**5항 드래깅 낚시 방법에서 하드베이트 루어를 사용할 경우 캐스팅 후**

**라인이 릴에서 추가로 풀려나가서는 안된다.**

**6항 눈에 보이는 물고기를 인위적으로 바디샷( 훌치기 )을 해선 안된다.**

**7항 1대의 낚싯대만 사용하여야 한다.**

**8항 1대의 낚싯대에 하나의 루어와 바늘 하나만을**

**( 한 개 이상 같거나 다른 루어를 사용 할 수 없다.**

**즉 가지바늘 연결은 사용해선 아니 된다. )**

**사용하는 것으로 한다.**

**예외의 루어들은 이와 같이 사용 할 수 있다.**

**예외가 아닌 것은 사용이 불가하다.**

**① 알라바마 리그 ( 바늘 5개 웜 5개까지 허용 )**

**② 하드베이트류 ( 트레벌 훅 3개까지 허용 )**

**③ 스윔베이트류 ( 어시스트 바늘 1개 허용 )**

**④ 와이어베이트류 ( 어시스트 바늘 1개 허용 )**

**⑤ 덩키리그 ( 바늘과 웜은 두 개씩만 사용한다. )**

**예외의 루어들은 지정하고 있는 정확한 루어만을 사용해야 하며**

**선수 개인이 육권해석 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.**

**위 외에 여타 개인이 개발하거나 새로운 개발품은 조직위원회에**

**보고와 상의 하에 사용할수도 있다. ( 위반 시 실격 )**

**9항 토너먼트 중에 원칙적으로 귀착지( 진행본부 ) 이외의 지역에**

**상륙해서는 안된다. 단 구조 및 사고 회피를 목적으로 한**

**행위는** **예외로 한다. 보트가 바람 등 부득이 연안에 접안되어**

**상륙이 불가피 시에 선수는 보트에서 몸 전체가 벋어나서는 안된다.**

**몸의 일부분은 항상 보트에 남아 있어야 한다.**

**( 여성 프로의 생리적 현상은 예외로 한다. )**

**10항 경기 중 마커부이는 1개만 사용 가능하며 진로방해 및 포인트**

**표시등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고 보트의 위치표시의**

**수단으로만 사용 가능하다. ( -1000g )**

**11항 선수는 마커부이로부터 반경 10m를 벗어나서는 안되며**

**벗어난 경우 방치행위로 인정하며 다른 방치된 마커부이를**

**발견한 선수는 안전을 위하여 회수해서 본부석에 가져온다.**

**( 해당선수 -1000g )**

**12항 마커부이엔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선수의 이름을 표시하며**

**대회중에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마커부이는 사용 할 수 없다.**

**( -1000g )**

**13항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커부이는 사용을 금지하며 보이지 않는**

**마커부이의 판단은 조직위원회에서 한다.**

**14항 눈에 보이는 배스를 고의로 훌치기 해서는 안된다.(실격)**

**15항 낚시 장소에 선행자가 낚시를 하고 있을 경우 선행자의**

**허락을 얻어야 한다. 허락하지 않을 경우 반경 20m 밖에서**

**낚시를 하여야 하며 루어간의 간격은 20m이고 전기모터를**

**내리고 있는 경우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.**

**( 친고,소명후 인정될시 - 1000g 패널티 )**

**단, 통로일 경우 통로를 막을 수 없으며 서로 합의 되는 시점에**

**통과하여야 한다.**

**16항 선행자의 보트와 선행자의 루어가 착수한 지점을 연결하는**

**직선구간의 좌우 20m 이내에는 들어가서는 안되며**

**캐스팅해서도 안 된다. 단, 선행자는 다른 선수가 접근 시**

**확실하게 접근 금지 및 캐스팅 금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.**

**17항 선행자의 낚시를 방해 해서는 안 된다. 크로스 캐스팅으로 인한**

**선행자의 낚시를 방해한 내용이 인정 시 선행자 낚시 방해 행위로**  **간주한다. 단 선행자의 캐스팅 방향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**

**1회에 한해 선행자가 배려할 수 있다.**

**18항 기계식 파워폴 앵커는 2개까지 허용하며 로프를 이용한 앵커는**

**안전상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다. 토너먼트 중에 보트를 어떠한**

**구조물과도 연결해서는 안된다. ( 실격 )**

**19항 대회장소에 따라 보트간의 거리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 때의 보트간**

**거리는 토너먼트 당일 또는 토너먼트 전에 발표한다.**

**20항 선행자가 한명 이상에게 허락한 경우 모든 선수에게**

**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.**

**21항 좁은 통로에 선행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 사전양해를**

**구한 후에 원칙적으로 캐스팅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야 한다.**

**22항 토너먼트 개시 후부터 종료시까지 낚시인의 테크닉, 조과, 루어,**

**장소 등의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된다 ( 소명 후 양측 실격 )**

**23항 토너먼트 도중에 타인에게 정보를 얻기 위한 통신기기의 통화, 문자,**

**SNS 등의 사용을 금하며 네비게이션, 지도는 가능하다**

**( 위반 시 실격 ) 통신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수는**

**조직위원회에게 소명 할 수 있는 문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.**

**단, 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통신기기를 사용 할 수 있다.**

**24항 토너먼트 전 1개월 동안 수중카메라 및 물안경 유리로 되어있는**

**기구로 물속을 보는 행위를 금한다. ( 실격 )**

**25항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( 위성항법장치 )는 인정한다.**

**26항 토너먼트중안 선수를 고의적, 인위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되며**

**해당선수의 소명이 불인정 될 경우에 실격처리하며**

**조직위원회 소집 후 추가 제제한다. ( 친고 )**

**제 23조) 사전 연습( PRACTICE )**

**프로 토너먼트의 사전 연습은 개최되는 호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.**

**1항 프로토너먼트의 사전 연습은 경기가 개최되는 주의 월요일부터**

**토너먼트 전전날( 전날PRACTICE 가능 ) 까지 금지하며 낚시와 보트**

**운항을 함께 금지한다. 단 토너먼트 전전날 토너먼트에**

**참여하기 위하여 보트를 계류하거나 경기장 주변에서 정비**

**운행 하는 것은 허용 한다**

**① 부득이 보트운항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조직위원회의**  **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.**

**② 사전 승인 후 보트 운항 시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 하는 선수는**  **낚시를 할 수 없다. ( 실격 )**

**2항 토너먼트 주에는 월요일부터 토너먼트 게시 전전날까지 토너먼트**

**전 지역에서 보트 및 워킹낚시를 포함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.**

**3항 프로 토너먼트 전날 연습기간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출시부터**

**오후5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마다 상황에**

**맞추어 FLW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**

**( 위반 시 실격 )**

**4항 연습시간에는 물고기의 보관 및 물칸( 라이브웰 )의**

**사용을 금한다.** **( 실격 )**

**제 24조)낚시 행위 금지**

**1항 낚시행위 금지구역**

**① 행정관서에서 지정 또는 협조 요청한 지역과 당 조직위원회에서**

**지정한 지역(위수지역)**

**② 사람이 있는 낚시용( 유료 )좌대 반경 30미터**

**③ 살아있는 그물선에서 5m는 낚시행위 및 착수 금지구역이며**

**그물의 시작이 연안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는 연안과**

**그물 사이 5m도 낚시 금지구역이다. ( 실격 )**

**④ 살아있는 그물선 주위 5m 안으로 지나갈 때는 반드시 서행으로**

**지나가야 하며 보트의 몸체가 물위에 드러나 있는**

**살아있는 그물에 고의적으로 닿아서는 안된다. ( 실격 )**

**⑤ 죽은 그물의 판단은 그물이 완전히 잠겨 있거나 그물의**

**삼각형 모양은 삼각을 고정하고 있는 줄 2개, 사각은 4개의**

**삼각이나 사각 모양을 지지하는 로프가 끊어지거나**

**그물의 통발 모양의 물통이 1/5이상이 들어난 경우를**

**말한다. (선수가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는 살아있는**

**그물로 판단하기를 권고합니다.)**

**⑥ 살아있는 그물에 관하여 이의제기나 소명 제기시 해당 그물의**

**관계자의 판단을 참고 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에서**

**결정 한다.**

**⑦ 활주 중에 살아있는 그물에 걸렸을 경우는 자진 신고 시**

**실격을 포함해서 모든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.**

**단, 그물이 훼손 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어민에게**

**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.**

**⑧ 토너먼트중이거나 토너먼트가 아닌 경우에도 살아있는 그물의**

**고의적이고 인위적인 훼손에 대하여는 그물에**

**문제( 그물주위에서 게임을 하려는 의도 등 )를 넘어서는**

**행위 이므로 적발 시 배상은 물론 실격 및 추가제제와**

**민. 형사 고발 조치한다.**

**제 25조) 계측**

**1항 계측 시간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.**

**2항 계측에 필요한 장비는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한다.**

**3항 생사 판정 및 이상 징후 판정을 받는다.**

**4항 물고기를 가두어 놓은 흔적**

**( 눈이 백태, 지느러미 세균 감염, 지느러미 피멍, 아가미 변색 등 )** **이 있는 경우에는.**

**( 계측제외 마리당 -1000g )**

**5항 물고기는 최상의 상태에서 계측을 원칙으로 한다. 대상어종을**

**계측장소에 가지고 올 때에는 계측용 가방에 충분한 물을**

**넣어야 하며 기포기 사용을 권장한다.**

**6항 계측 수조에 담았을 때 옆으로 눕거나 뒤집어진 고기가 30초간**

**시간을 주어 아가미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완전히 죽은 고기로**

**인정하며 아가미가 움직여 계측관이**

**살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계측어종으로 인정된다.**

**단, 계측관 만이 생사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누구도**

**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. ( -300g )**

**7항 키퍼사이즈는 물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에서 꼬리까지로 한다.**

**8항 키퍼사이즈가 미달된 물고기를 가져와 계측 시 발견되면 계측에서**

**제외되며 패널티를 부과한다. ( -300g )**

**9항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의 길이와 체중을 늘려서는 안된다.**

**( 적발 시 실격 )**

**10항 계측 시 바늘이 미 제거된 고기, 즉 미신고 시 싱커와 바늘은**

**제거한 후 계측한다. ( -500g )**

**11항 바늘 미 제거 고기는 계측 전 자진신고하면 마리 당 패널티 -20g을**  **감량하고 계측을 해준다. 자진신고 시 싱커와 바늘은 제거를 한**

**상태에서 계측을 하여야 한다.**

**12항 죽은 고기 및 훅 제거 확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시에는 실격으로**

**처리한다.**

**13항 생사판정은 규정에 맞추어 실시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당일 계측관이**

**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.**

**14항 계측 마감 후 발생한 패널티는 차기 토너먼트에 적용한다.**

**15항 계량 중량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이의 신청에 의해**

**재 계량이 인정된다. 단 두 번째 계량 수치를 그 날의 성적으로**

**처리한다.**

**제 26조) 순위 결정**

**1항 1일 토너먼트 시간 중에 낚아 올린 규정된 물고기 총 중량으로**

**순위를 결정 한다. 1일 이상 토너먼트에서는 1일차와 2일차의**

**물고기 총 중량으로 한다.**

**( 프로 토너먼트 상황에 따라 계측 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.**

**조직위원회가 계측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. 즉 총중량과**

**포인트를 합산하여 점수를 계산 할 수도 있다.**

**변경 시 조직위원회에서 따로 발표한다. )**

**제 27조) 동점자 처리**

**1항 1일 토너먼트 총 중량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**

**상위 항목을 우선 적용 한다.**

**① 낚은 물고기 마릿수 우선**

**② 패널티 부과가 적은 경우**

**③ 접수번호 우선**

**2항 1일 이상 토너먼트에서 득점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**

**상위 항목을 우선 적용 한다.**

**① 총 중량 우선**

**② 낚은 총 마릿수 우선**

**③ 접수번호 우선**

**3항 연간 종합 성적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 항목을**

**우선 적용 한다.**

**① 연간 낚은 총중량 우선**

**② 연간 낚은 마릿수가 많은 것 우선**

**제 28조) 이의 신청**

**1항 모든 이의신청은 토너먼트 당일 계측종료 마감시까지 조직위원회에**

**신청하여야 한다.**

**2항 생사판정, 계측, 심사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**

**3항 재심사의 경우 재심이 결과로 처리 된다.**

**4항 부정, 패널티, 토너먼트 운영이 집계상의 착오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**  **신고를 할 수 있다. 단 본인이 이의를 신청해야만 한다. 대리**

**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**

**5항 이의신청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누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**

**이에 대한 내용이 회자될 경우 조직위원회에서 해당**

**선수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제 조취를 취할 수 있다.**

**( 실격 및 제명 )**

**제 29조) 시상**

**1항 토너먼트**

**① 프로 토너먼트에서는 상위 5위까지 시상하며 상금과 상패**

**부상을 수여한다.**

**② 코앵글러 시상 또한 조직위원회가 정한 상패 및 부상을**

**수여한다.**

**( 대회 규모에 따라 상금과 상패,부상이 달라질수있다. )**

**2항 연간 종합 성적**

**① 연간 종합 성적은 각 토너먼트에서 획득한 점수의**

**합산으로 결정한다**

**② 프로 토너먼트 점수는 1위 100, 2위 99.......50위까지로 하며**

**51위는 30점 노피쉬는 20점 으로 처리한다.**

**③ 패널티 적용으로 실격 처리된 선수는 0점을 부여하며**

**부정한 내용으로 패널티 적용 시 0점 으로 한다.**

**④ 연간 종합성적 우수자를 시상하며 획득 점수가**

**가장 많은 선수는 올해의 선수라는 표현으로**

**“ANGLER OF THE YEAR” 라고 칭한다.**

**제 30조) 카메라의 운용**

**1항 참가선수는 500만 화소 이상으로 최소 HD급 영상을 토너먼트**

**시간동안 기기자체나 외장메모리에 녹화가 가능하고 녹화된 영상을**

**일반적인 기기(컴퓨터등)에서 확인할수있는 카메라(블랙박스)를**

**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. (출전제한 및 실격) 또한 안전키의**

**착용 등 명확한 선수의 게임 영상이 나와야 한다**

**단, 방송용 카메라가 동승 시엔 예외로 정할 수 있다.**

**2항 녹화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으며 카메라의 갯수 제한은**  **두지 않는다.**

**3항 촬영시간은 출발 시점부터 대상어를 물칸에서 웨이트백에**

**옮기는 시점으로 하며 녹화가 되어있지 않을 시엔 원칙적으로**

**“실격“으로 처리한다. 총 녹화시간 중 처음이나 끝부분 중에**

**5분 전후로 녹화가 안됐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황을**

**판단한 후에 이를 결정한다. 단, 조직위원회에서 인가한 관계자와**

**방송카메라가 동승 시엔 조직위원회와의 면담**

**확인 후에 결격사유가 없을시 이를 인정한다.**

**4항 녹화영상에는 좌우 수면과 주행중인 선수의 모습, 낚시중인 선수의**

**전체모습, 대상어를 라이브웰에 넣는 정황이 나와야한다. ( 실격 )**

**엔진위의 장착시엔 엔진을 올리거나 내릴시 29조 4항의 요건에**

**충족되어야한다. ( 실격 ) 원칙적으로 데크위에 설치 할 것을**

**5항 카메라는 데크에서 부터 렌즈기준으로 50cm이상으로 설치해야하며**

**권고합니다.**

**6항 토너먼트 종료후 1등부터 10등까지와 빅배스 수상자는 녹화된**

**메모리나 카메라를 폐회식 직후에 제출하여야하며 당일에**

**1등부터 5등까지는 조직위원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**

**조직위원회 임원들과 선수가 함께 녹화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.**

**7항 녹화된 영상물에 대한 확인은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**

**공정성을 가진 인원이 입회하에 확인 한다.**

**8항 선수는 입상 시 제출한 메모리카드나 녹화된 기기의 문제가 발생 시**

**추가로 녹화된 메모리카드나 녹화된 기기가 있는 경우에**

**제출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는 이를 인정한다.**

**9항 선수는 조직위원회에서 인가한 관계자가 동승시에도 원칙적으로**

**녹화에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여야하며 고의적,인위적으로 녹화를**

**중단 (실격) 해서는 안되며 관계자가 동승하더라도 토너먼트**

**시작부터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(단, 조직위원회의 인가 시에는**

**허용한다.)는 실격으로 처리한다.**

**10항 토너먼트 중 카메라 조작중,오작동 및 밧데리 교체로 인한 녹화정지는**

**물칸의 대상어를 버린 후 관계자의 확인을 받고 토너먼트를**

**진행 할 수 있다. 단, 본부석에 예비카메라 또는 관계자가**

**없는 경우는 선수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**

**실격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한 이의 제기는 할수 없다.**

**11항 예비 카메라는 토너먼트 진행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만 대여가**

**가능하고 예비 카메라의 사용중 문제가 발생 시 조직위원회에 이의**

**제기를 할 수 없다.**

**12항 입상자의 녹화영상 확인자는 경기중의 부정행위의 대한**

**중대사항(실격사항)만 원칙적으로 확인하며 적용한다.**

**13항 성적 발표전에 조직위원회에서는 모든 선수에게 토너먼트 당일의**

**녹화된 영상자료를 요구할수 있고 선수는 성실이 응해야한다.**

**14항 모든 선수는 녹화된 영상을 성적 발표 전까지 보관하여야한다.**

**15항 실격자의 녹화 영상은 원칙적으로 게시하지 않는다.**

**16항 조직위원회는 실격이나 벌금 등의 패널티를 받은 해당선수의 소명**

**제기 후에 운영위원회의 소명 불인정 결정이 난 이후에도**

**미 인정시에는 조직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에**

**게시할수 있다.**

**17항 당 조직위원회는 모든 토너먼트에 참가한 선수의 영상물에 대한**

**모든 권리를 갖는다.**